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업무 범위 조정 〉
■ 이주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161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업무범위에서 “긴급 누수 복구” 제외 ..	2
IV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2024년 1월 4일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도관망과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상수도 수도관벽 내 침전물이 함께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현행법상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 범위에서 “긴급 누수 복구” 제외

개정안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 ----- ----- ----- ----- -----.
1. 상수도관망의 세척	1. (현행과 같음)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단서 신설>	2. ----- -----관리. 다만,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3.·4.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21조의4에서는¹⁾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 업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대행업은 2019년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적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수율²⁾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³⁾을 위하여 도입됨.

1)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 유수수량은 유효수량(생산된 수돗물 수량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외부로 누수되고 난 후의 양) 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함.

3) 법률 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2019.11.26. 공포)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수도관망 누수관리 중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동 대행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가 중복되어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동 대행업 신설 전에는 굴착사고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망 파열 시 복구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였으나, 법 개정 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수도관망 복구공사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⁴⁾.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정비

법률 1717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2020.3.31. 공포)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4)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단순(긴급) 누수복구공사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는 별개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한다고 해석한바 있고 환경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바 있음. 참고로, 「수도법」에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로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도 상수도 복구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및 등록기준 비교]

구 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고
근거법령	「수도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 별표 2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별표1 ⁵⁾	
업무범위	① 상수도관망의 세척 ②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구 등 누수관리 ③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 정비 ※ 「수도법」 제21조의4제2항에 규정	①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②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수관 제외) ③ 관세척 및 갱생공사 등 (비고)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복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⁶⁾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별표1 본문 및 비고에 규정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 “복구” 명시되어 동 대행업만이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 존재
등록기준	① 사무실, ② 기술인력 4명 이상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⁷⁾ 1급 1, 2급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계제작 등 상하수도관련기술자격 1), ③ 업무범위별 장비기준 상이 (세척장비, 수압계, 누수탐지기, 밸브개폐기 등) ※ 「수도법」 제21조의4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의3에서 규정 ⁸⁾	① 기술인력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1) ②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별표2 본문 및 비고에 규정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전문공사업종 중 하나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현황(2023.12.기준)]

구 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합 계	관망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	
합 계	223	74	106	43	8,769
서울	22	11	5	6	1,187
부산	18	7	10	1	382
대구	26	11	13	2	219
인천	8	5	3		421
광주	0	0	0	0	176
대전	16	7	5	4	217
울산	2	2	0	0	157
세종	0	0	0	0	45
경기	61	16	33	12	1,623
강원	8	1	5	2	501
충북	8	2	3	3	527
충남	4	2	1	1	519
전북	8	1	6	1	518
전남	14	4	6	4	573
경북	18	3	11	4	854
경남	8	2	3	3	574
제주	2	0	2	0	276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대행업 신설 취지는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관리 및 점검·정비 등을 통해 유수수량 분석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 적수 사고와 같은 수돗물 품질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수도관 파열 등으로 인한 관망 긴급 복구 업무는 전문 건설공사업과 연관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7)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는 수도법 제25조의2에 근거하는 자격으로,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 될 수 있음. 1급과 2급으로 구분됨.

8)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상세 등록요건은 참고자료1 참조.

이에 개정안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 범위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상수도관망 누수탐사·유수수량 분석 등 누수관리 업무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수도관의 긴급 복구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업무 범위 중복을 해소할 수 있고, 수도관의 긴급 복구 필요시 등록업체 수가 많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이를 시행함에 따라 상수도관망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⁹⁾.

문 의 처

02) 6788-5547

9) 예로,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3.12.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는 276개이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는 2개이므로 긴급 복구 요구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참고자료1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수도법 시행령 별표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기술인력

-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 사무실

2. 업무의 구분에 따른 장비 기준

구분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장비	가. 세척장비 1조(組) 이상 나. 유량계 2대 이상 다. 수압계 2대 이상 라.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각 2대 이상 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또는 관내시경 장비 1조 이상 바. 밸브개폐기 4대 이상	가. 청음식 누수탐지기 2대 이상 나.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장비 1조 이상 다. 유량계 1대 이상 라. 수압계 1대 이상 마. 밸브개폐기 4대 이상	가. 관로탐지기 1대 이상 나. 금속탐지기 1대 이상 다. 산소농도측정기 2대 이상 라. 밸브개폐기 4대 이상

비고

제1호가목3)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 참고자료2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수도법 시행령 별표2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를 한 날부터 3년간 기록·보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 가. 세척일시 및 위치
 - 나. 세척구간의 관 제원(諸元)
 - 다. 세척방법 및 세척에 소요된 수량(水量)
 - 라. 세척 이후의 관 상태 및 세척 단계별 수질 측정값 등 세척 결과
 - 마. 세척 배출수의 처리방법 및 결과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 가. 누수탐사 일시 및 원인
 - 나. 누수발생구간의 관 제원
 - 다. 누수탐사 수행 내용
 - 라. 누수복구의 방법 및 복구 결과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 가. 점검·정비 대상 및 일시
 - 나. 점검·정비 내용 및 방법
 - 다. 점검·정비 결과

※ 참고자료3 : 누수탐사 절차 및 누수탐사 결과 정리 흐름도(상수도관망 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참조)

